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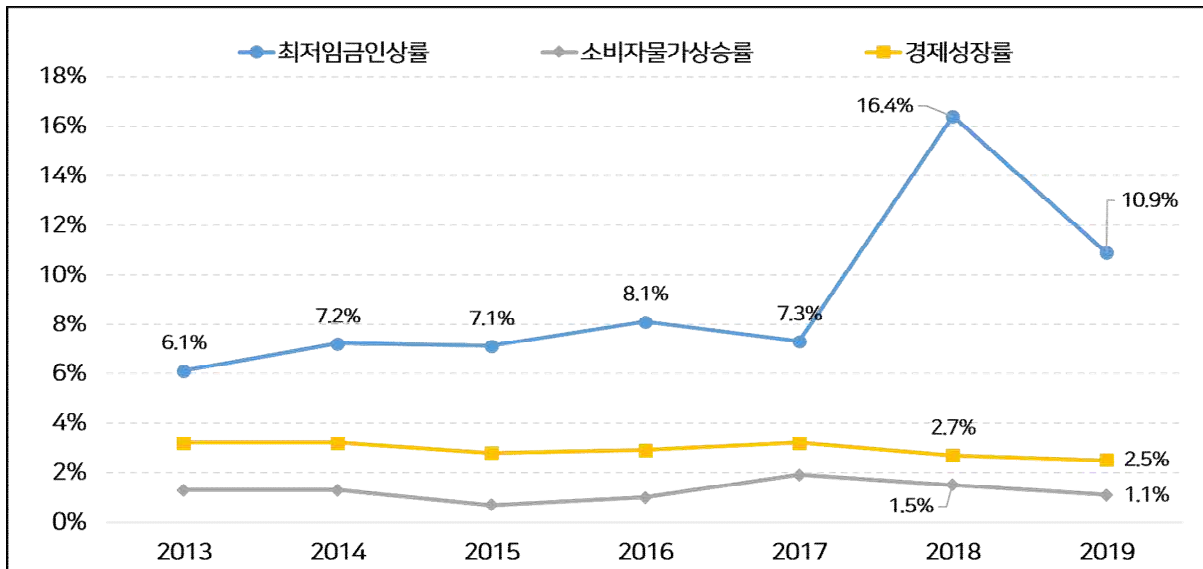
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

1 최저임금 인상속도

○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증가

- 2018년(16.4%), 2019년(10.9%)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거 5년(2013~2017)간 최저임금 인상률(연평균 7.2%)의 1.5~2.3배, 물가상승률(연평균 1.2%)의 9.1~13.7배, 경제성장률(연평균 3.2%)의 3.5~5.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임.

< 최근 최저임금인상률, 명목임금상승률, 소비자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 추이 >

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연평균 (2013~2017)	2018	2019
최저임금인상률	6.1%	7.2%	7.1%	8.1%	7.3%	7.2%	16.4%	10.9%
소비자물가상승률	1.3%	1.3%	0.7%	1.0%	1.9%	1.2%	1.5%	1.1%
경제성장률	3.2%	3.2%	2.8%	2.9%	3.2%	3.1%	2.7%	2.5%

주 : 1. 명목임금상승률은 1인 이상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기준, 2019년은 노동연구원 전망치(4.1%) 활용
 2. 2019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(2019.4) 활용
 3. 연평균 증가율은 2013~2017년 기하평균 수치

자료 : 최저임금위원회, 한국은행, 고용노동부

2 최저임금 미만을

○ 2018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11만 1천명, 전체 근로자 대비 15.5%로 2017년보다 2.2%p(45만명) 증가

-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하고 있는데,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되었음을 의미

※ '18년 주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을(%), 경찰부기조사 기준, 최저임금위원회)

▶ 주요 업종별: (숙박음식업) 43.1 (도소매업) 21.6 (농림어업) 40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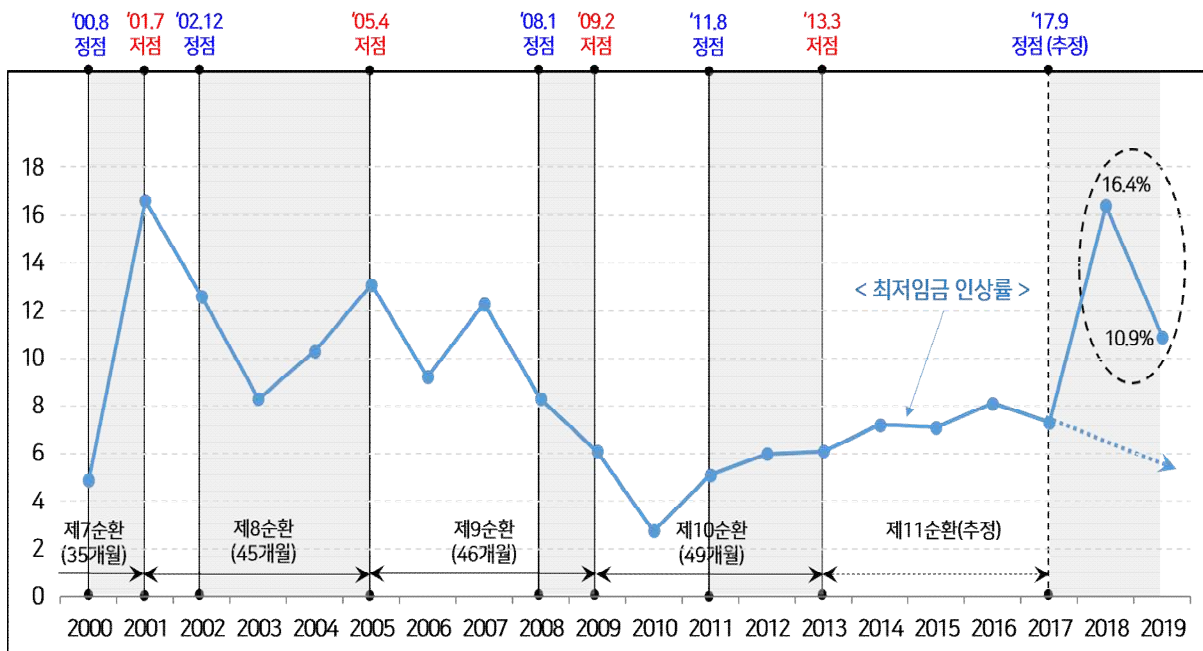
▶ 주요 규모별: (1~4인) 36.3 (5~9인) 19.6 (10~29인) 14.9

3 경기순환과 최저임금 인상

○ 경기순환기 측면에서 지표 상 경기가 2017년 2~3분기 중 정점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면, 최저임금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조정 되었어야 함을 시사

※ 통계청장은 작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'경기 정점을 몇 월인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2017년 2분기 언저리'라고 언급

< 경기순환기와 최저임금 인상률 >



자료 : 최저임금위원회; 통계청

4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

-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부작용 없이 운용되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%가 최대치로 이해되고 있음.
 -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ILO 등 국제기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나, 복지수준이 높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도 중위임금 대비 60%를 넘지 않음.
- 現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%를 초과하는 수준(63.0%*, '19년)으로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
 - * 경총이 OECD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,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
 - ※ 비교 가능한 OECD 28개국 중 터키(81.3%), 칠레(69.8%), 리투아니아(68.0%), 포르투갈(66.0%), 뉴질랜드(64.6%)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나, 이들 국가들은 특수한 경제여건에 있거나 경제와 산업구조 상 우리와 비교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곳임.
- 우리나라의 2019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(63.0%)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* 중에서 최고 수준
 - *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(% , '19년 기준, 경총 추정치)
: [美] 32.2 [日] 42.1 [獨] 47.2 [英] 58.3 [佛] 61.8

5 2009년과 2019년 최저임금 수준 비교

○ 최저임금 측면에서는 2009년 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이 훨씬 부담강도가 높은 상황

- 시급 4,000원인 2009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45.2%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만했던 반면, 시급 8,350원인 2019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%를 초과해 이미 세계 최상위권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

< 최저임금 관련 주요지표 비교(2008~2009 vs 2018~2019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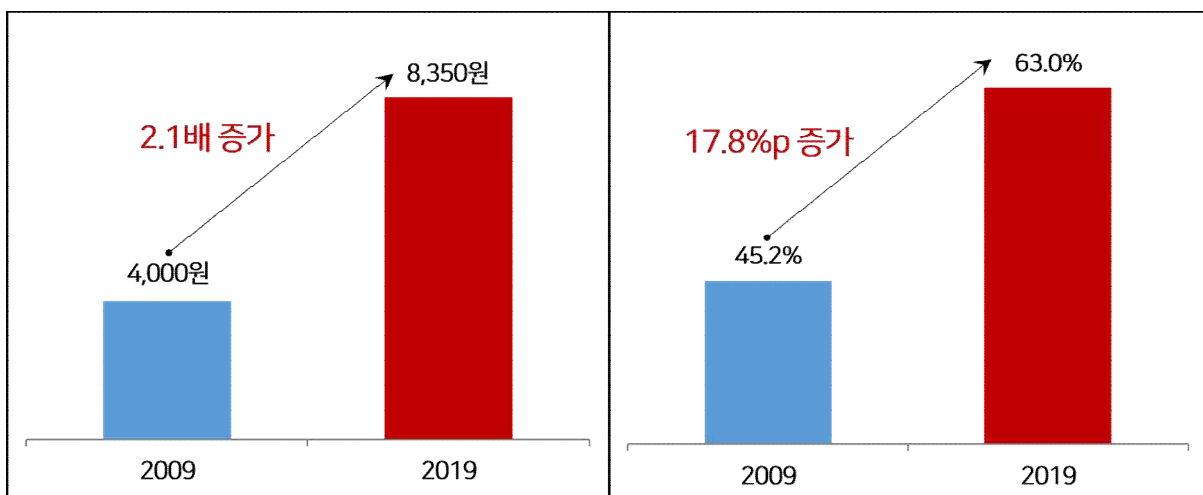
구분	2008	2009	2018	2019
최저임금액	3,770원	4,000원	7,530원	8,350원
최저임금인상률	8.3%	6.1%	16.4%	10.9%
미만율	10.8%	12.7%	15.5%	?
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	43.6%	45.2%	58.6%	63.0% ^{주)}

주 : OECD 통계와 고용부 분석결과('18년)를 활용해 경총이 추정된 수치
 자료 : 최저임금위원회; OECD; 경총

< 최저임금 관련 주요 지표 비교(2009 vs 2019) >

[최저임금액]

[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]



자료 : 최저임금위원회; OECD; 경총

6 최근 주요경제 지표

(1) 경제성장률

- 2018년 경제성장률은 2.7%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, 이는 정부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큰 상황.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여년 만에 최저치 기록

*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(% , 한국은행)

: 8.9('00)→ 6.8('10)→ 2.8('15)→ 2.9('16)→ 3.2('17)→ 2.7('18)

※ '19년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$\Delta 0.4\%$ 로 '08년 4분기($\Delta 3.2\%$)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

(2) 실물경제

- 2018년 양호했던 소비가 최근 들어 약화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, 수출도 최근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실물경제가 부진. 고용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, 이마저도 60세 이상이 주도하고 경제의 주축인 30~40대는 감소

- ① **(소비)** 2018년 총소비는 정부소비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 하였으나, 2019년 들어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(5월은 다소 회복)

※ 총소비, 민간소비, 정부소비 증가율 추이(% , 전년비, 한국은행)

[총소비] 2.8('17)→ 3.5('18)

[민간소비] 2.6('17)→ 2.8('18) / [정부소비] 3.4('17)→ 5.6('18)

※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(% , 전년(동월)비, 통계청)

: 1.9('17)→ 4.3('18)→ 4.3('19.1)→ $\Delta 1.9$ ('19.2)→ 2.5('19.3)→ 1.4('19.4)→ 3.4('19.5)

- ② **(투자 · 생산)** 2018년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$\Delta 3.8\%$, $\Delta 5.3\%$ 를 기록하며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, 생산 증가세도 둔화

※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(% , 전년(동월)비, 통계청)

[설비투자] 14.1('17)→ $\Delta 3.8$ ('18)→ $\Delta 17.0$ ('19.1)→ $\Delta 26.8$ ('19.2)→ $\Delta 15.6$ ('19.3)
→ $\Delta 6.3$ ('19.4)→ $\Delta 11.5$ ('19.5)

[건설투자] 10.5('17)→ $\Delta 5.3$ ('18)→ $\Delta 10.7$ ('19.1)→ $\Delta 12.2$ ('19.2)→ $\Delta 6.2$ ('19.3)
→ $\Delta 8.3$ ('19.4)→ $\Delta 5.3$ ('19.5)

※ 전산업생산 증가율 추이(% , 전년(동월)비, 통계청)

: 2.5('17)→ 1.4('18)→ 0.9('19.1)→ $\Delta 1.9$ ('19.2)→ $\Delta 0.6$ ('19.3)→ 0.7('19.4)→ 1.0('19.5)

③ **(고용)** 연간 취업자 증가폭*이 예년의 평균 30만명대에서 지난해 9.7만명으로 크게 둔화. 2019년 취업자 증가폭은 2~5월 20만명대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주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기인. 제조업은 2018년 4월 이후 감소 지속

* 최근 취업자 증감 추이(만명, 전년(동월)비, 통계청)

: 31.6('17) → 9.7('18) → 1.9('19.1) → 26.3('19.2) → 25.0('19.3) → 17.1('19.4) → 25.9('19.5)

※ '19년 2~5월 신규취업자가 평균 24만명 가량 증가했으나, 대부분 60세 이상에 집중(4개월 평균 약 36만명)되고 30~40대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(4개월 평균 약 △26만명)했음.

※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(만명, 전년(동월)비, 통계청)

: △1.8('17) → △5.6('18) → △17.0('19.1) → △15.1('19.2) → △10.8('19.3) → △5.2('19.4) → △7.3('19.5)

④ **(수출)** 2018년 수출은 5.4% 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, 반도체 경기 악화 같은 요인으로 12월 이후 최근까지 7개월 연속 감소*

* 최근 수출 증가율 추이(% , 전년동월비, 산업부)

: △1.7('18.12) → △6.2('19.1) → △11.3(2) → △8.4(3) → △2.1(4) → △9.5(5) → △13.5(6)

※ 최근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(% , 전년동월비, 산업부)

: △8.4('18.12) → △23.3('19.1) → △24.8(2) → △16.7(3) → △13.8(4) → △30.5(5) → △25.5(6)

⑤ **(경기지수)**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하락 추세

※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(포인트, 통계청)

[동행지수] 100.8('17.1) → 100.3(12) → 100.4('18.1) → 100.3('18.6) → 99.2(12) → 99.1('19.1) → 98.6(2) → 98.5(3) → 98.4(4) → 98.6(5)

[선행지수] 100.4('17.1) → 100.9(12) → 101.0('18.1) → 100.4('18.6) → 98.9(12) → 98.6('19.1) → 98.3(2) → 98.2(3) → 98.3(4) → 98.1(5)

※ 경기동행·선행지수가 10개월('18.6~'19.3)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최초. 올해 4월 이후로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혼조세

⑥ **(해외직접투자)** 국내 투자가 부진한 반면, 해외투자 특히 제조업 해외투자가 대폭 증가

※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(국내→해외) 추이(억달러, 수출입은행)

▶ '18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86.4% 증가

[전산업] 396('16) → 446('17) → 498('18) / [제조업] 87('16) → 88('17) → 164('18)

▶ '19년 1분기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41.2% 증가

[전산업] 97('18.1q) → 141('19.1q) / [제조업] 24('18.1q) → 58('19.1q)

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· 소상공인 애로

- 도소매업,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11개 업종*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9,546개사 (모집단 266만개사 중 9,546개사 표본 추출) 중 49.7%가 年 영업이익 2,400만원 미만이며, 21.7%는 年 영업이익 1,200만원 미만(중소벤처기업부, '19.2)

* 제조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, 운수업, 숙박·음식점업, 부동산·임대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예술·스포츠·오락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수리·기타 개인서비스업

< 영업이익 구간별 소상공인 분포 (2017) >

구분	1,200만원 미만	1,200~2,400만원 미만	2,400~3,600만원 미만	3,600~4,800만원 미만	4,800~6,000만원 미만	6,000만원 이상
구성비	21.7%	28.0%	20.1%	11.9%	5.9%	12.4%

자료 : 중소기업부,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, '19.2

- 소상공인의 지출 부담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'인건비, 4대보험'(85.8%*), '임대료, 권리금 등'(24.0%), '카드수수료, 광고비 등'(15.9%), '불공정 문제'(8.4%) 순으로 조사(소상공인연합회, '19.5)

* 응답률은 복수응답 기준 : 합계가 100%를 넘어섬.

- 임차료가 높은 서울에서도 인건비 비중(평균 운영비용 대비)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(서울연구원, '18.10).

※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요 운영비용 구성(503개사 대상, 서울연구원, '18.10)

▶ 평균 운영비용 총액 735.4만원 : ()안은 총액 대비 비중

[인건비] 378.4만원(51.5%), [임차료] 170.2만원(23.1%), [전기·수도비] 47.7만원(6.5%)

8 최저임금 구분적용

○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속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여 영세·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.

① **(업종별)**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.

-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의 편차가 20%p에 달해 심각한 상황

※ '18년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(%), 경찰부가조사 기준, 최저임금위원회, '19)

: (전체) 15.5 (전기가공업) 0.5 (제조업) 6.9 (건설업) 10.7

(도소매업) 21.6 (운수창고업) 15.7 (숙박음식업) 43.1 (농림어업) 40.4

② **(규모별)**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6.3%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미만율이 높게 나타남.

※ '18년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(%), 경찰부가조사 기준, 최저임금위원회, '19)

: (전체) 15.5 (1~4인) 36.3 (5~9인) 19.6 (10~29인) 14.9

(30~99인) 7.3 (100~299인) 5.5 (300인 이상) 2.3

③ **(지역별)**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수준이나 생계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

-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,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치 못하고 있음.

※ 주요 지자체별 임금수준(%), '18년 4월 기준, 정액급여 + 특별급여 기준, 고용노동부)

▶ 서울특별시 임금수준(100) 대비 각 지자체별 임금수준

[울산] 98.5 [전남, 대전] 85.2 [경기] 84.2 [충남] 83.1 [경북] 79.9 [인천, 경남] 78.1

[충북] 77.3 [부산] 77.2 [강원] 75.8 [전북] 75.6 [광주] 75.0 [대구] 69.0 [제주] 67.1

9 최저임금 산정시 「근로시간 수」 기준

-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[최저임금 산입 임금(분자) ÷ 근로시간 수(분모)]을 산정하는 '근로시간 수(분모)'의 두 가지 기준
 - (대법원 판결 기준) 분모를 '소정근로시간'으로 한정
 - (고용부 시행령 기준) 분모를 '소정근로시간 + 법정유급휴식시간'으로 규정
- 고용부 기준의 문제점
 - 실제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'주휴수당'에 대한 근로시간(주휴 시간) 같이 시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'가상의 시간'을 포함하여 최저 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본질과 상치
 - *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'유급휴일'이라는 단어 자체에 '근로제공이 없다'는 의미가 있음. 즉 '주휴시간'은 근로시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가공적 개념
 -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함.
 - ※ 범죄(최저임금 위반) 구성요건을 결정하는 한 축인 '최저임금 산입범위'를 법에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과 같이 다른 한 축인 '시급 산정시간 수'도 시행령이 아닌 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.

10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

-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으나,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
 - ※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 노동생산성 · 급여수준(중소기업중앙회, '18)
: [노동생산성] 87.5% [급여수준] 97.3%
 - ※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애로요인(중소기업중앙회, '18.7)
: 의사소통(51.2%), 잦은 사업장 변경(14.2%) 順
-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에 대한 숙식비(약 40만원)부담까지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(중소기업중앙회, '19.3)
-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·영세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노무관리에도 애로를 유발
 - ※ △처음 입국한 근로자와 3년차 근로자의 임금이 같아지는 현상, △근로자 간 불화, △내국인근로자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이 발생